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4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5. 9.

장 호 섭 의원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장호섭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스쿨존으로 관리되는 반면,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는 상대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중·고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보행권 보장,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별도의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제6호를 신설하여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2025년 9월 3일부터 2025년 9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보행권 보장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00925086 |
|----------|----------|

발의연월일: 2025. 9. 3.

발 의 자: 장호섭 박종길 박왕규  
박정환 고명욱 정순옥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스쿨존으로 관리되는 반면,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는 상대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중·고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보행권 보장,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별도의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제안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신설함 (안 제5조제6호).

##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다.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비대상)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초·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br/>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p> <p>1. ~ 5. (생략)</p> <p><u>&lt;신 설&gt;</u></p> | <p>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br/>-----<br/>-----<br/>-----<br/>-----<br/>-----<br/>-----<br/>-----<br/>-----.</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초·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u></p> |

# 【 관계 법령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행안전법 ]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